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67867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B으로부터 [redacted] [redacted]군 C 대 311.6㎡, D 대 318.5㎡, E 대 33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6

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69,840,000원, 지방교육세 6,984,000원, 농어촌특별세 3,492,000원, 합계 80,31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고와 B은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3. 17.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6. 12. 13.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취득세 69,84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6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내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